

의안 번호	2159	울산광역시 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3. 10. 6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10. 6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10. 20.(금)

2. 제안이유

- 복산1·2동 통합에 따른 통합동 명칭이‘복산동’으로 확정됨에 따라 복산1동과 복산2동의 명칭, 동장 정수, 관할 구역을 통합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**【별표】** 의‘울산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’에서
 - 행정동은‘복산1동’과‘복산2동’을 통합하여‘복산동’으로 변경
 - 동장 정수는‘복산1동’과‘복산2동’각 1을 통합하여‘복산동 1’로 변경
 - 관할구역은 복산1동과 복산2동 구역을 통합
 - 관할구역 중‘복산1동’,‘복산2동’을‘복산동’으로 변경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7조 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

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동은 ‘복산1동’과 ‘복산2동’을 통합하여 ‘복산동’으로 변경 등 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근거법규

지방자치법

제7조(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을 폐지하거나 신설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